

#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구리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4.

**구리시장**

##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사업규모 : 324대 / 1,119,240천원

○ 사업기간 : 2024.3.13.(수) ~ 2024.11.29.(금) (단,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11.29.소인분까지인정, 조기마감시 마감일까지), ③이메일

①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mecar.or.kr>)

②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메일: [1577-7121@aea.or.kr](mailto:1577-7121@aea.or.kr) (사업시행일 이후 신청부터 접수인정)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지자체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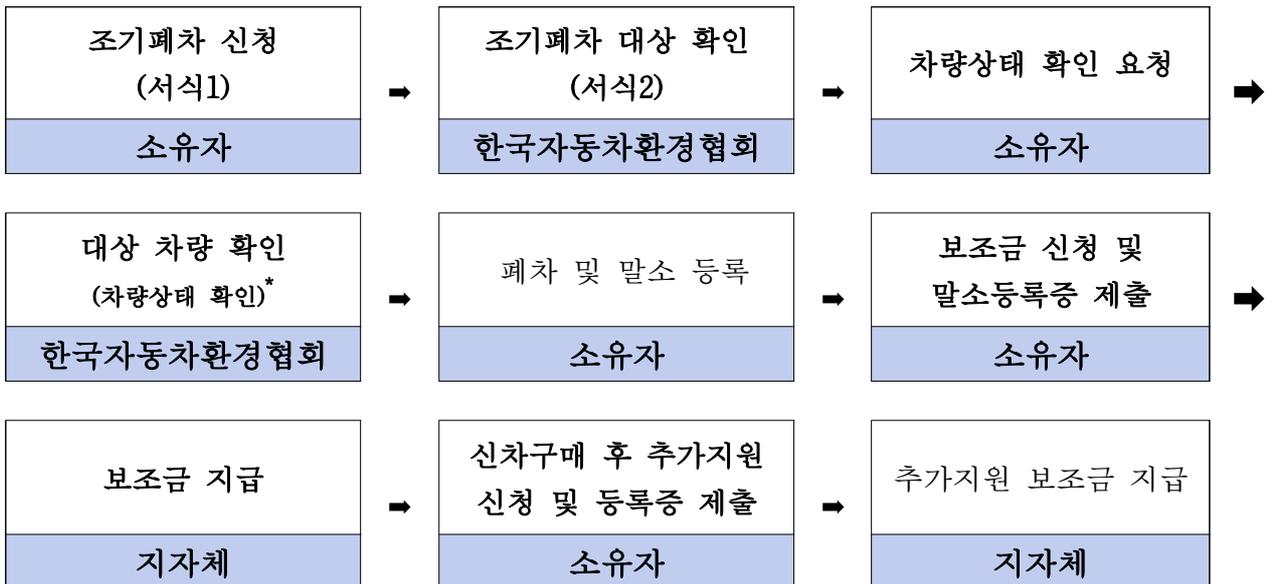
○ 보조금 청구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 ② 지원대상 ① ~ 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 ~ 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①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구리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차량상태)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 가동 확인
-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한정)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 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③ 지원절차



※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납부해야 함)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등 첨부서류 제출

1. 신청서 접수(서식1) ※방문 접수 불가

<b>인터넷</b>	<p>○ 인터넷 신청방법</p> <p>“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a href="https://www.mecar.or.kr/main.do">https://www.mecar.or.kr/main.do</a>)</p> <p>→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p> <p>→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p> <p>→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p> <p>▶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1]</p> <p>○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p> <p>※ 건설기계(도로용3종 및 지게차, 굴착기)는 접수 불가</p>
<b>등기우편</b>	<p>○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p> <p>○ 구비서류</p> <p>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p> <p>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p> <p>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p> <p>※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p> <p>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p> <p>⑤ 해당자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p> <p>○ 접수 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조기마감시 마감일까지)</p> <p>※ 사전접수 불인정</p>
<b>이메일</b>	<p>○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p> <p>○ 구비서류(아래 서류를 반드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선명하게 첨부 송부)</p> <p>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p> <p>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p> <p>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p> <p>※ 공동 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p> <p>④ 해당자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저소득층,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p> <p>○ 접수 기간 내 발송된 이메일 인정 (조기마감시 마감일까지)</p> <p>※ 사전접수 불인정</p>

2.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산정 등)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소유자에게 발급(문자 및 모바일 전자고지)

3.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 가동 여부) → **정상 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 방법 1. **현장 확인 검사(수도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실시 후  
통보(문자메시지 등)

※ 수도권 전문 폐차업체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방법 2. **온라인 검사 (수도권 외) [참고3]**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에  
직접 차량사진·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검사**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4. 보조금 청구

-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여야 함

※ 해당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과에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로 팩스·사진  
등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

5. 보조금 지급

- 구리시청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1개월 이내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

※ 사업초기 및 사업 예산 배정이 늦어 질 경우 다소 늦어 질 수 있음.

6. 추가 구매 보조금 신청

- 소유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 '23.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  
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신차 출고 지연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구리시에 사전승인 받아야 함(서식7)

7. 추가 구매 보조금 지급

- 구리시청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1개월 이내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

※ 사업초기 및 사업 예산 배정이 늦어 질 경우 다소 늦어 질 수 있음.

#### 4 지원금액

##### ○ 기본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 조기폐차 추가(구매)지원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u>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u>, 신규 등록 차량이 <u>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u></li> <li>*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li> </ul>
	· 그 외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u>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u>, 신규 등록 차량이 <u>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u></li> </ul>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차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 <u>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u>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li> <li>· 중고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u>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u>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li> <li>*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li> <li>※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li> </ul>

구분	지원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p>	<p>·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u>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u>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p>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p> <p>**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p> <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p> <p>※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p> <p>※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p> <p>※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lt;법령/정책&gt;환경정책&lt;기후대기&gt;&lt;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지게차 또는 굴착기</p>	<p>·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p> <p>·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p> <p>·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u>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u>를 추가로 지원</p>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u>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u>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p> <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p>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추가 지원하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 근로자 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상한액 범위 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3) 총중량이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4) 3.5톤 이상 차량 폐차 후 중고차 구매 시 지원율 100% 추가 지원(신차는 2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추가 지원하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 근로자 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상한액 범위 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 5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 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추가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 지원 등 >

구분		의무운행 기간(2년)	중복 지원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휘발유·가스 차량구입에 따른 지원	X (없음)	의무운행 기간(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X (회수 불필요)
	전기·수소 차량구입에 따른 지원	O (준수)		O (회수) ※ 단,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50만원) 회수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O (준수)		O (회수)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민원방지를 위해 구리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반복할 수 없음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

## 6 자주하는 질문

###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 ◎ (질문) 출고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되나요?

- (답변) 금년부터 출고당시 저감장치(DPF) 부착여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량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 (질문) 4등급, 5등급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후 확인 또는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경우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

###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나오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3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 (질문) ①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②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지원 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기준이 다른가요?

- (답변) ① 자동차 기준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 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 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②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①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식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수도권 지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공동명의(A,B)로 폐차 후 단독(A)명의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이 되나요?

- (답변) 당초 명의자 "A"가 포함된 경우로 보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등록된 "A" 명의자에게 지원 가능 합니다.("B"의 위임장 제출 필요)

◎ (질문) 조기폐차 후 추가 구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계약서 불가)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 또는 50%를 추가 지원 합니다.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를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위·수탁 계약차량인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6.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 1부.
  7. [별지 제7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 연장 신청서 1부
  8. [참고 1] 인터넷 접수방법 1부.
  9. [참고 2] 차량 등급 조회 1부.
  10. [참고 3] 대상차량확인 온라인시스템 사용안내 1부 끝.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연식( )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input type="checkbox"/> 용도( )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부착가능 <input type="checkbox"/> 부착불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
		저소득층 소상공인			원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	
	중고차			원 (₩	)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수소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에 50만원을 더하여 지원 가능(단, 상한액 범위내)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b>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b>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별도 실시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같음



[참고 1] 인터넷 접수방법

##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 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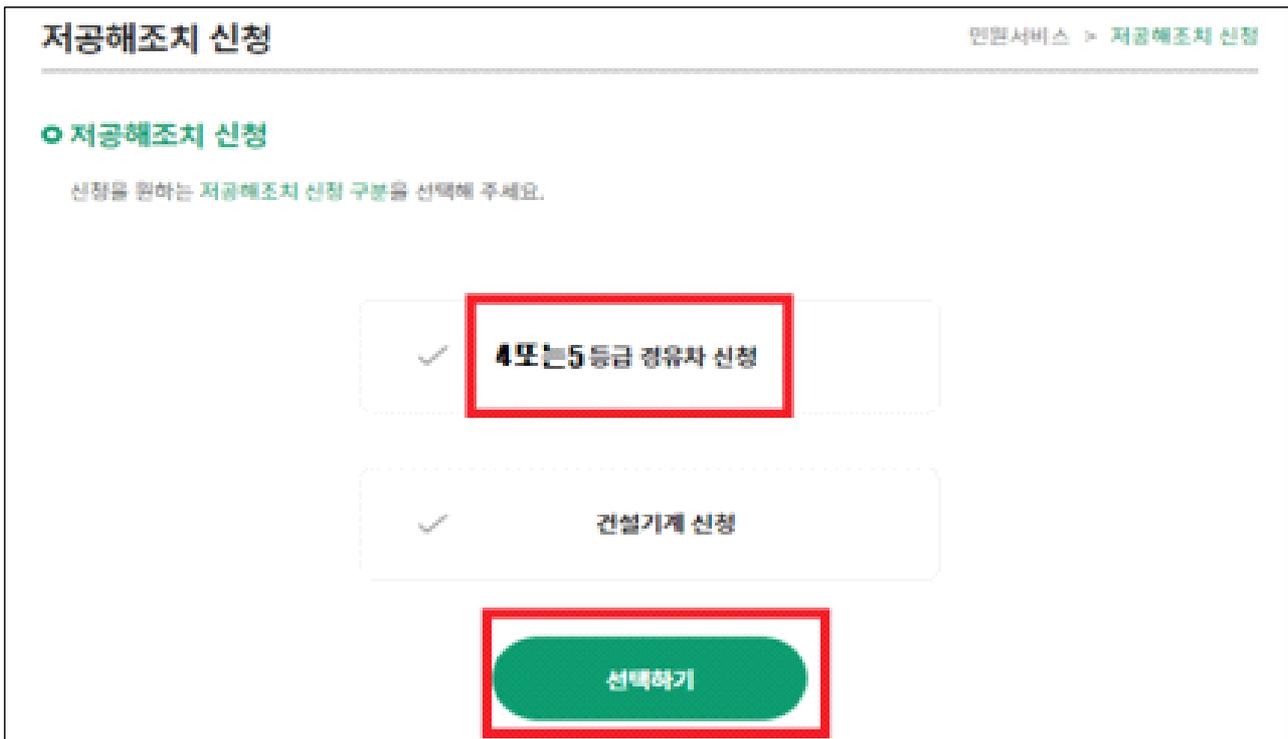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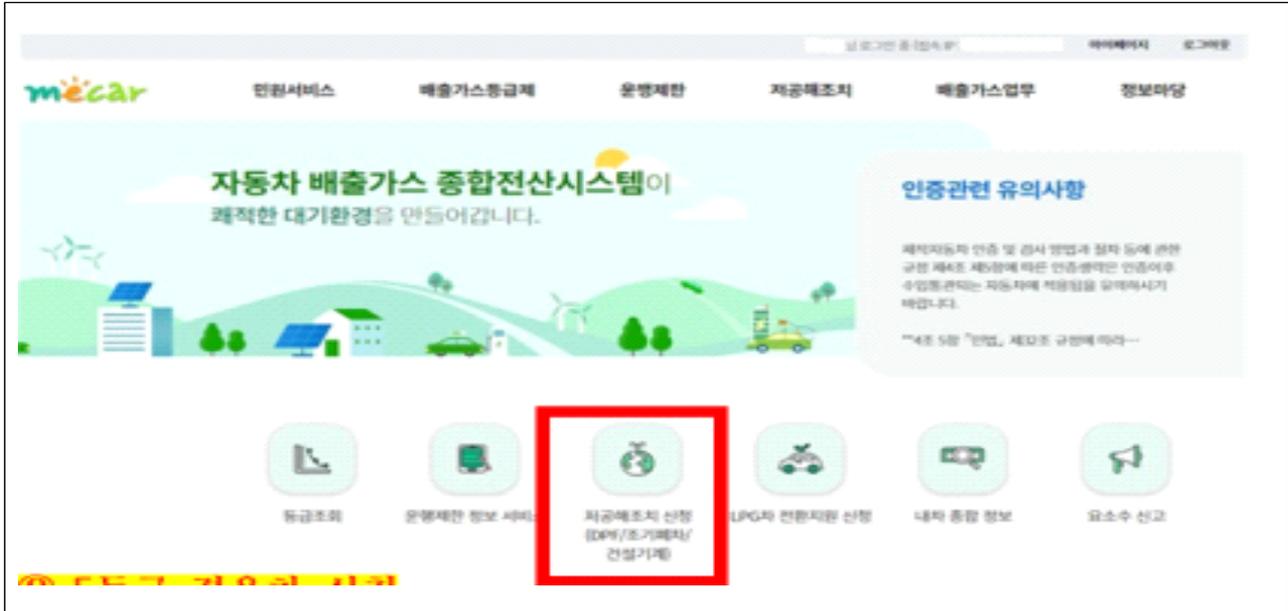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제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 제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제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제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제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제공해신청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

※차량불가 및 미개찰장치 건인 경우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불가하여, 조기폐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실제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역번호 + 120)

\*표시항목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지역	<input type="text"/>
*휴대전화	01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자동차 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차량조회"/>
차대번호	<input type="text"/>
*저공해조치 방법	<input type="radio"/> 저감장치 부착 <input checked="" type="radio"/> 조기폐차
차명	<input type="text"/>
연식	<input type="text"/>
소유자명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신청지자체	<input type="text"/>
전화번호	[선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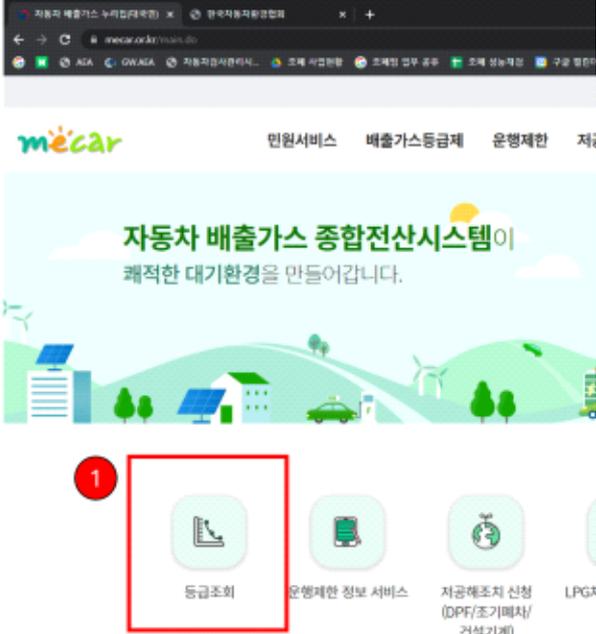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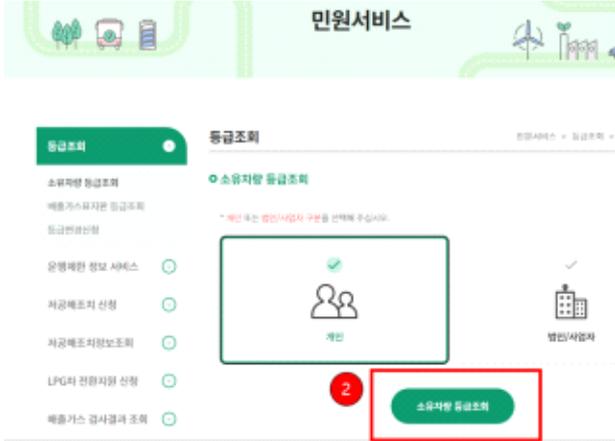
본인은 위와같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button" value="신청취소"/>	<input checked="" type="button" value="저공해신청"/>
-------------------------------------	---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목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참고 2]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p>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p> <p>① 등급조회 클릭</p>	 <p>The screenshot shows the MECAR homepag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MECAR logo and links for '민원서비스' (Public Service), '배출가스등급제' (Emission Level System), '운영제한' (Operation Restriction), and '저탄소' (Low Carbon). The main banner features the text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줍니다.' Below the banner, there are four service icons: '등급조회' (Emission Level Check), '운영제한 정보 서비스' (Operation Restriction Information Service), '저공해차 신청 (DPF/조기폐차/건설기계)' (Low Emission Vehicle Application), and 'LPG차' (LPG Vehicle). The '등급조회' ic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circle containing the number '1'.</p>
2	<p>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p> <p>②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p>	 <p>The screenshot shows the '민원서비스' (Public Service) page. On the left, there is a sidebar menu with options: '등급조회' (Emission Level Check), '소유차량 등급조회' (Vehicle Emission Level Check),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Emission Label Emission Level Check), '등급변경신청' (Emission Level Change Application), '운영제한 정보 서비스' (Operation Restriction Information Service), '저공해차 신청' (Low Emission Vehicle Application), '저공해차정보조회' (Low Emission Vehicle Information Query), 'LPG차 전환지원 신청' (LPG Vehicle Conversion Support Application), and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회' (Emission Test Result Query). The '소유차량 등급조회' option is selected. On the right, there are two buttons: '개인' (Individual) and '법인/사업자' (Corporate/Business). The '개인'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green box and a red circle containing the number '2'. Below these buttons is a green button labeled '소유차량 등급조회' (Vehicle Emission Level Check), which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p>
3	<p>③ 차량번호 입력</p>	 <p>The screenshot shows the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 (Vehicle Emission Level Check - Individual Vehicle) page. On the left, there is a sidebar menu with options: '등급조회' (Emission Level Check), '소유차량 등급조회' (Vehicle Emission Level Check),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Emission Label Emission Level Check), '등급변경신청' (Emission Level Change Application), '운영제한 정보 서비스' (Operation Restriction Information Service), '저공해차 신청' (Low Emission Vehicle Application), '저공해차정보조회' (Low Emission Vehicle Information Query), and 'LPG차 전환지원 신청' (LPG Vehicle Conversion Support Application). The '소유차량 등급조회' option is selected. On the right, there is a form with a dropdown menu for '차량번호' (Vehicle Number) and a '찾기' (Search) button. The '찾기'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circle containing the number '3'. Below the form, there are several notes: '- 차량번호 또는 차종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eck the emission level by vehicle number or vehicle type number.), '- 옵션으로 로그인 후 조회시 차량상태정보가 제공됩니다.' (After logging in with an option, vehicle status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 차량소유주가 공동명의로 경우 대표명예자가 차량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In the case of joint ownership, the representative name can check the vehicle grade.), and '- 대표명예자가 아닌 경우 확인시 전화문의 확인됩니다.' (If not the representative name, please check by phone call.).</p>

<p>4</p>	<p>④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⑤휴대폰 인증</p>	
<p>5</p>	<p>⑥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p>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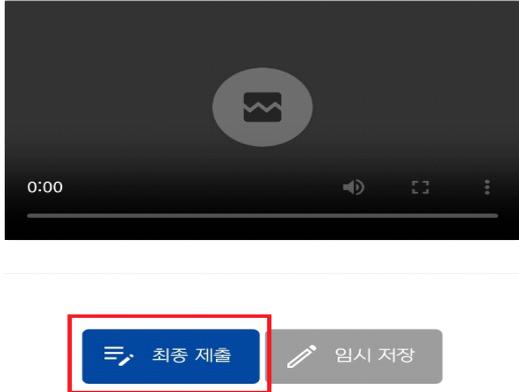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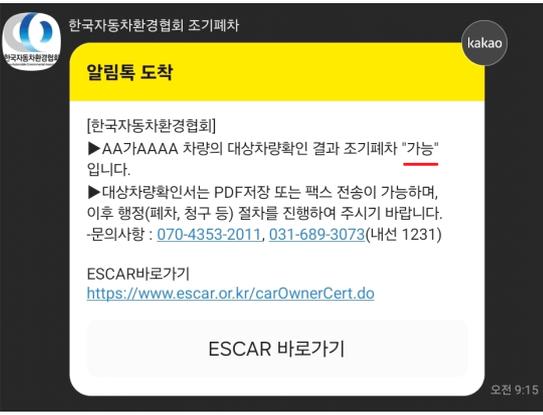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내선번호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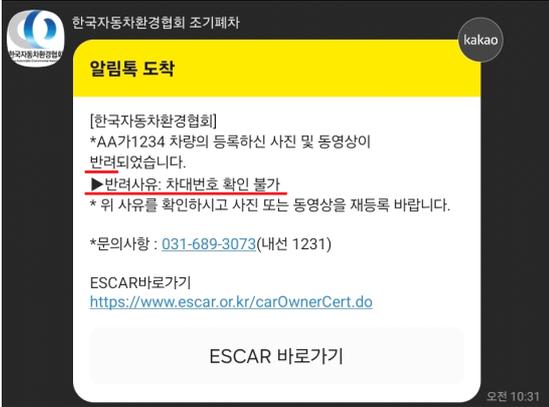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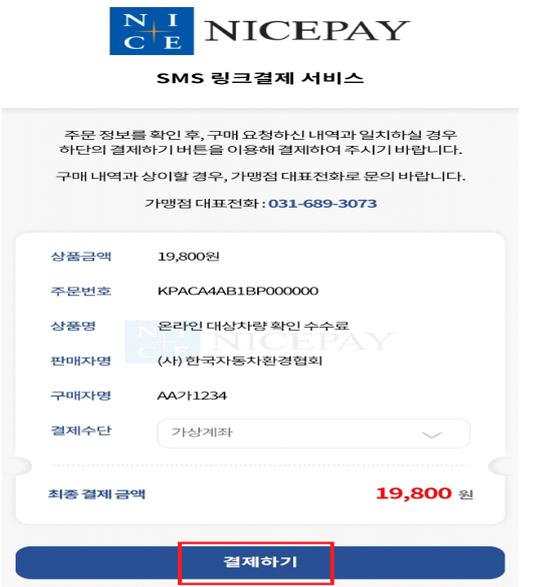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사진 5매,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사진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 5매, 동영상은 차량 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p><b>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li> <li>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li> </ol> <p>※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p>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p>2 단계 (차주)</p> <p>온라인 로그인</p>	 <p><b>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b>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신청 및 진행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신청 및 결과확인</b></p>	<p>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p>						
<p>3 단계 (차주)</p> <p>정보 확인</p>	<p><b>대상차량 확인</b></p> <p>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님의 보조금 신청 차량 목록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등록 번호 AA7가1234</li> <li>•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li> <li>• 차명 액티언스포츠</li> <li>• 연식 2011</li> <li>• 폐차장 미지정</li> <li>• 보조금 산정일 2024-01-15</li> <li>• 입금 여부 미입금</li> <li>• 사진 등록 일자</li> <li>• 임시 저장 일자</li> <li>• 검사 완료 일자</li> </ul> <p>진행상태 : 사진등록 필요 <b>사진등록</b></p>	<p>① 신청 내역 확인 → 사진등록</p> <p>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p> <p>① 차량 정보</p> <table border="1" data-bbox="890 1077 1401 1312"> <tr><td>차대번호</td></tr> <tr><td>KPACA4AB1BP000000</td></tr> <tr><td>차명</td></tr> <tr><td>액티언스포츠</td></tr> <tr><td>차량 번호</td></tr> <tr><td>AA가1234</td></tr> </table>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액티언스포츠	차량 번호	AA가1234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액티언스포츠								
차량 번호								
AA가1234								
<p>4 단계 (차주)</p> <p>사진 업로드</p>	<p>① 차량 사진 <b>메뉴얼 보기</b></p> <p>파일을 선택해주세요. <b>업로드</b></p> <p>• 가능한 확장자명 : gif, png, jpg, jpeg</p> <p>• 1. 정면 사진 (예시)</p> 	<p>① 업로드 → 내파일 → 차량 사진 5매 선택 ※ 사진 5매(전·후·좌·우·차대번호 또는 후면 번호판)</p> <p>②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 → 사진등록 완료</p> <div data-bbox="900 1675 1401 1946"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b>www.escar.or.kr 내용:</b></p> <p>AA가1234차량 사진, 동영상상이 최종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관리자 검토 후 안내 예정입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p> <p>▶ 결과는 수수료 납부완료 차량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수수료 납부는 나이스페이먼츠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확인</b></p> </div>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p>5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p>	<p>차량 동영상</p> <p>파일을 선택해주세요. <b>업로드</b></p> <p>가능한 확장자명 : mp4, mkv, avi, mov, flv</p> 	<p>※ 보조금산정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업로드 가능하며, 보조금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진 업로드 필수</p> <p>※ 사진·동영상을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전달받아 업로드 하는 경우 사진에 저장되어있는 촬영 일자 정보 등이 삭제되어 업로드가 불가능하니,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함</p> <p><b>&lt; 업로드 완료 시 알림톡 안내 &gt;</b></p> 
<p>6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p>	<p><b>&lt;검사 합격 시&gt;</b></p> 	<p>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사진·동영상 검토</p> <p>② 합격 여부 판정 → 결과 안내 및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p> <p>※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p> <p>○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합격 여부 안내</p> <p>○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p>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p>[Web발신] AA가1234 고객님의, 안녕하세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결제하실 내역 안내드립니다.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상세 내역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p> <p>*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기폐차 차량의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납부(가상계좌) 안내 입니다.</p> <p>*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수수료 납부 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p>* 납부관련 자세한 문의는 <b>031-689-3073</b>(내선번호 1231) 연락 바랍니다.</p> <p>▶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가상계좌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p> <p><a href="https://web.nicepay.co.kr/smart/slo.jsp?rid=vKfD2401269042">https://web.nicepay.co.kr/smart/slo.jsp?rid=vKfD2401269042</a></p> <p>가맹점 상호: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금액: 19,800원 가맹점 대표전화: <b>031-689-3073</b></p> <p style="text-align: center;"><b>&lt;검사 불합격 시&gt;</b></p> 	<p>○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불합격 여부 안내 - 불합격 사유 안내로 재등록 등 요청</p>
<p style="text-align: center;"><b>7</b>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p>		<p>① 안내 문자 메시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p> <p>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9,8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p> </div>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	--------	-----------

**가상계좌 발급 완료**

입금 가상계좌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상품금액을 입금하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상품금액	19,800원
판매자명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결제수단	가상계좌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구매자명	AA가1234
입금계좌	56206527717577
계좌은행	신한은행
입금기한	2024-03-26(화)까지

**결제요청금액 19,800 원**

**8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PDF 저장    팩스 발송

확인번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성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생년월일
	주소	경기도 양주시 흥남로 11번길로 317	
	전화번호	010-9387-1480	FAX
	주등록번호	487666A	외국등록번호
신차 과출자 및 과거래 또는 중차기	연식 (2011 ~ 2012년)	연식(연도)	연식(연도)
	연식 (2013 ~ 2014년)	연식(연도)	연식(연도)
중 요 검 사 항 목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중형(중형) : □

2024년 01월 25일  
확인자 : 남재민

(사)한국자동차협회장

①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확인 →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